

#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09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7. 19.

발 의 자 : 황주홍 · 김중로 · 김광수

박준영 · 이찬열 · 박주현

김종회 · 김삼화 · 조경태

강창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위계와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6조의2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</u>